

# 傳統的 減價償却方法과 時價償却方法에 대한 批判的 研究

—Inflation 時를 中心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itional Depreciation Method and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Method

朴 京 洛\*  
(Park, Kyung Rak)

## 目 次

第I章 序 論

第II章 傳統的償却의 再考와 時價償却의 主張

1. 減價償却의 概念
2. 取得原價主義와 時價主義의 備考
3. 取得原價償却에 대한 批判
4. 時價償却主張

第III章 結 論

參考文獻

---

\* 尙志大學校 經商大學 會計學科 助教授

## ABSTRACT

In this study traditional depreciation method has been analysed carefully and then compared with the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basic theory underlying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demanding new method of depreciation.

In this treatise the inevitability of rejecting the basic theory of depreciation and traditional depreciation method has been treated. Furthermore the probable consequence when such refutation of traditional depreciation occurs is studied. How to resolve such problems and what is the basis for claiming for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have been also analysed-

Through this analysis and research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rawn:

1. For the purpose of complete recovery of invested capital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is demanded.
2. For the purpose of undertaking realistic profit computation and accounting to apply to comparison and analysis of business operation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is required.
3. When the feasibility of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is guaranteed then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can be promoted.
4. Depreciation on current cost basis should be studied from the standpoint of evaluation position.

## 第 I 章 序 論

減價償却方法에 關한 問題는 簿記 또는 理論會計學에서 그동안 많은 研究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學者들이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減價償却方法에 關한 會計』가 企業의 損益에 미치는 影響이 지대하므로 企業의 經營成果와 財務狀態를 정확하고도 진실하게 表示하기 위하여 會計處理上의 問題點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現代會計는 貨幣價值不變의 公準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去來는 모두가 取得原價主義를 評價基準으로 擇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繼續의이고도 激甚한 『인플레이션』의 影響으로 종래의 基準에 따른 會計方法으로는 財務諸表에 表示된 數値는 眞實性和 客觀性 그리고 有用性を 잃어버린 單純한 過去의 歷史的 數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企業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固定資產의 會計處理는 『인플레이션』이 甚하면 甚할 수록 그 歪曲의 程度는 激甚하게 된다. 英國의 産業革命 以後에 企業에서의 固定資產이 차지하는 比重은 날로 激增되어 固定資產에 대한 會計處理의 正確性 如否가 直接으로 企業의 存立에까지 影響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인플레이션』이 甚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인플레이션』時에 固定資產會計의 大宗을 이루는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會計를 다루고자 한다.

物價가 上昇하면 收益에 對應하는 正常的인 減價償却費를 計上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費用은 過去에 物價水準이 낮을때의 歷史的인 記錄인데 반하여 收益은 變動된 物價에 의해 計上된 高水準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架空利益(Paper Profit)이 發生한다. 따라서 資本에 대한 課稅, 過當한 配當을 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資本의 蠶食을 招來하여 名目資本조차도 維持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基礎價格을 現在의 物價水準보다 顯著하게 낮은 過去의 歷史的인 原價에 따라 記錄하였기 때문에 固定資產의 實質的 維持도 不可能하게 한다.

여기에 종래의 取得原價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에 대하여 物價水準의 變動을 勘安한 時價償却 또는 代替原價償却論이 擡頭하게 되었다. 이 時價償却에 對한 論議는 오래 前부터 많은 論者들에 의하여 主張되었는데 아직도 明確한 結論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原價論者들도 이 時價償却에 대하여 寔然하게 計算의 複雜

성과 困難性 그리고 主觀이 介入할 餘地가 많다고 反對할 뿐 이에 대하여 體系的이고 具體的으로 納得할 수 있도록 反對論을 主張하는 者는 거의 없다.

그래서 本 論文은 傳統的 減價償却方法과 時價償却方法에 對한 比判的 研究를 『인플레이션』時를 中心으로 國內外 論文 및 各種 書籍을 參考하여 理論的으로 研究하고자 한다.

## 第Ⅱ章 傳統的 減價償却의 再考와 時價償却의 主張

### 1. 減價償却의 概念

固定資産의 大部分은 그 使用과 時日의 經過에 따라 그 價値는 減價된다. 會計學에서는 이와 같은 固定資産 價値의 減少 또는 減損을 특히 『減價』라 한다. 固定資産의 減價는 企業의 利益 有無 또는 多小에 關係없이 一定한 推算有效 期間內에 一定한 比率로 費用 또는 製品의 製造原價로 계산하여 固定資産의 取得 原價를 每期 계속적으로 減價함과 아울러 製品의 販賣 또는 收益에 대응하여 固定資産에 投下된 資本을 回收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은 節次를 會計學에서는 減價償却이라 하고 이때 發生하는 費用項目 또는 原價項目을 減價償却費라 한다. 減價償却에 關하여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에서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sup>1)</sup>

『減價償却會計는 有形固定資産의 原價 또는 기타의 基礎價額에서 殘存價額을 次減한 殘額을 그 資産의 推定耐用期間에 組織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會計의 한 制度이다.』 이 正義에 의하면 減價償却會計는 資産의 評價過程도 아니며 同 資産에 對한 代替資産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有形固定資産의 原價를 營業期間에 配分하는 過程이다. 그리고 減價償却費는 궁극적으로 製品이나 用役に 配分되어 收益에 對應하게 된다.

減價償却의 의미를 보다 充分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제 측면에서 고찰해보자.<sup>2)</sup>

1)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8), p. 264.

2) 李正浩, 「現代會計理論」(經文社, 1988), p. 265.

① 損益計算과 減價償却과의 관계

減價償却費는 첫째 販營費로 나타나며 둘째는 工場原價로서 製品製造原價로 나타난다. 販營費로 나타나는 減價償却費는 損益計算에서 全額이 純利益을 減少시키지만 製品原價로 나타난 減價償却費는 當期에 賣出된 製品の 製造原價로 配分된 減價償却費의 一部分이 賣出原價로 되어 損益計算에서 純利益을 減額시킨다.

그러나 販賣하지 않고 在庫資産으로 남아 製品에 포함되어 있는 減價償却費는 資産으로 取扱되어 同 製品이 販賣될 때까지 在庫資産으로 남게 된다. 특히 損益計算에서 減價償却費는 販營費에 속하던 工場原價이던 純利益을 똑같이 減額시키지만 販營費에 속하는 것은 賣出總純益 計算에는 費用에 計算되지 않고 營業利益 計算過程에서만 費用으로 認識된다. 그러나 工場原價로 認識되는 工場減價償却費는 販賣比例에 따라 賣出總利益 計算에서 賣出原價인 費用으로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工場原價로 計算되는 減價償却費는 原材料 消費額과 같은 概念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 剩餘金 및 配當金과 減價償却과의 관계

減價償却費는 費用으로서 收益에 對應하게 되어 純利益을 減少시켜 結果적으로 剩餘金を 減少시킨다. 또한 配當金은 순수한 純利益으로 부터 支給되어야만 한다. 純利益은 收益과 費用의 흐름으로 認識하므로 이 過程에서 減價償却費가 費用으로 認識되고 配當金은 純利益의 흐름을 남게한 후에 支給되는 結果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때 減價償却費는 剩餘金を 減少시키게 되어 그 結果 配當金 支給에도 큰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③ 現金의 흐름과 減價償却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原價와 費用이 發生하게 되면 現金支出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減價償却費는 現金支出을 수반하지 않고도 純利益을 減少시킨다. 따라서 減價償却費 相當額을 每期에 計上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同 固定資産을 再取得할 수 있는 現金資金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減價償却費 計上額만큼은 社外流出이 아닌 社內留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는 不特定資産에 對한 留保인 것이다. 또한 留保된 不特定資産은 債務를 償還하는데도 充當되며 다른 資産을 購入하는데도 使用된다. 따라서 舊資産의 代替를 위한 特別資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每期에 現金이나 기타 流動資産으로 減價償却費 相當額을 積立하여야 할 것이다.

## ④ 財務諸表와 減價償却과의 관계

우선 貸借對照表와 減價償却과의 관계를 보자 固定資産에 投下된 原價는 減價償却節次에 의하여 流動資産으로 回收된다. 따라서 固定資産에 投下된 原價는 現金, 外傷賣出金, 在工品, 半製品, 製品 등의 流動資産 形態로 回收되어 貸借對照表에 表示하게 된다. 특히 이를 固定資産의 流動化라 한다.

貸借對照表의 表示方法을 검토하여 보자. 有形固定資産의 경우 企業이 減價償却費를 計上하게 되면 企業帳簿의 固定資産에서 直接差減하는 方法과 減價償却 充當金을 設定하여 間接差減하는 方法이 있다. 그러나 帳簿記帳을 直接 또는 間接 差減하던 不問하고 貸借對照表上에는 差減하는 形式으로 表示하여야 한다. 또한 無形固定資産의 경우에는 減價償却費를 直接 固定資産에서 差減하여 帳簿에 記帳하고 貸借對照表上에도 差減한 殘額 즉 未償却殘額으로 表示하여야 한다.

損益計算書와 減價償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減價償却費를 販營費에 속하는 것과 工場原價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減價되는 모든 資産의 價値減少分을 減價償却費라는 用語로 일률적으로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의 경우에는 減價資産의 性質에 따라 減價償却費라는 用語를 달리 쓰고 있다. 즉 價値의 減少가 되는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費는 Depreciation이라 하고, 數量的 減少가 되는 鑛山油田 등과 같은 減耗性 資産 또는 枯渴性 資産에 대해서는 Depletion이라는 用語로 쓰고 있으며, 無形固定資産이나 移延資産 등에 대한 價値減少分은 Amortization이라는 用語로 使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用語를 아직 區分 使用하고 있지 않으나 減價償却이라는 用語대신 減耗償却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減價償却이라는 節次는 여러 측면에서 그 本質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 2. 取得原價主義와 時價主義의 比較

現實의 評價基準으로는 原價와 時價가 있다. 따라서 原價評價主意와 時價評價

主義의 會計學的 意味를 比較 考察하여 일정한 評價主義가 採擇될 때 그것이 財産計算 및 損益計算(成果計算)에 어떠한 意味와 關聯을 가지고 이들의 計算內容을 如何히 規定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時價主義가 가진 會計學的 意味를 明白히 함으로써 時價償却의 主張을 支持하려고 한다.

### 1) 取得原價主義

原價에 의한 評價는 財産計算 및 成果計算에 어떠한 意味와 關聯을 가지고 이들의 計算內容을 如何히 規定하는지에 대하여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① 財産計算에 어떠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이 때의 原價란 財貨의 購入價格을 말하는데 消耗財에 대해서는 消耗價值分을 差減한 價額을 말하며, 財貨의 購入價格은 財貨의 購入日에 支出한 價額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財貨의 購入日에 現實價值를 말하는 것이고 購入日以後에 市場價格이 變動하여 財의 價格으로서 適當한가 어떤가는 전혀 別도의 問題로 한다. 그러므로 財貨의 購入價格은 歷史的 意味에 不過하며 眞實한 價值表示는 不可能하다. 그렇지만 만일에 純粹靜態의인 經濟를 前提한다면 財貨의 購入價格은 바로 評價基準으로 될 수 있지만 現實社會는 결코 靜的이 아닌 動的인 社會이다. 따라서 財貨의 購入價格은 항시 財貨의 眞實한 價值를 決定하는 基準이 되지 못한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도 불구하고 財貨의 購入價格은 貸借對照表上 財産項目의 評價基準으로서 널리 採擇되고 또 會計學者들 대부분이 이것을 支持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생각컨대 그것은 經濟社會에서 價值變動이 輕微한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며 經濟社會에서 價值變動이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市場에서의 價值變動은 經營體에 拘束되어 있는 財産의 價值變動과는 直接 關係가 없기 때문이다. 즉 經營內에서 財貨의 價值는 市場의 價值變動과는 隔離되어 있다는 理由로 市場에서의 價值變動을 度外市하여도 좋다는 立場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原價는 그 財貨에 대한 現實의 價值를 明白히 表示하지 못하고 항시 企業이 그 財貨를 購入하기 위해 消費된 貨幣資本을 意味하는데 不過하다. 그러므로 原價는 企業의 經營資本이 어느 方面에 어느 精度로 投下되어 現在 어떠한 形態로 保有되고 있는가를 表明하는데 不過하다.

② 다음에 成果計算에 대하여 어떠한 關聯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成果計

算에서의 收益을 原則적으로 볼 때 그 去來日의 價値이기 때문에 問題는 주로 收益에 對應하는 費用項目의 評價如何에 있다.

消費財의 購入價格이 購入日 以後에 騰貴하며, 그 販賣價格도 騰貴하는 경우를 假定해 보면 이 때는 騰貴된 價格으로 流入하는 販賣收入金과 이에 對比되는 當該 財貨의 費用額은 當初의 購入價格으로 計上되기 때문에 去來成果는 費用財를 時價計算할 때와 比較하여 過大하게 表示된다. 그 결과 企業에 流入되는 貨幣額 중 企業에 殘留하는 部分은 종전의 費用額 範圍에 그치고 殘餘는 成果計算의 部分으로 된다. 말하자면 假裝利益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反對의 경우에는 假裝損失이 成果計算에 計上된다.<sup>3)</sup> 換言하면 假裝損益分은 資本의 實體 그 自體의 領域에 속하는 部分이고 財貨 그 自體의 價値變動에 복귀되어야 할 部分이다. 즉 購入價格이 騰貴된 경우에는 財産部分을 去來利潤에 加하는 것으로 되어 그 만큼 眞正한 去來利潤을 增大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下落의 경우에는 財産計算에 속해야 할 價値의 下落部分을 成果計算의 領域에 混入하는 것이 되어 그 만큼 去來利潤을 縮小하는 결과로 된다.

이와 같이 原價에 의한 評價는 價値變動期에는 올바른 財産計算 및 成果計算을 不可能하게 한다.

## 2) 時價評價主義

時價라고 할 경우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즉 評價時点에서의 一般的 價格水準의 變動을 考慮하여 換算된 時價인가 또는 現實의 그때 그때의 時價인 財의 調達時價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이때 同一한 調達時價라도 去來日의 調達時價인가, 現實의 評價日 時價인가가 問題視된다. 또한 市場에 따라서 販賣市場의 時價인가, 調達市場의 時價인가도 問題視된다. 이들 各各의 경우에 대해 詳細하게 論해야 하지만 本節에서는 計算日의 調達市場時價를 擇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調達時價란 調達時点에서 當該 財貨를 어떠한 價値로 調達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價格이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의 調達時價는 財産의 再生産

3) Fritz Schmidt: Die Organische Tageswertbilanz. 山下勝治, 「有棧觀對照表學說」, (東京, 東文館, 三版, 1989), p. 316.



價格이다. 購入價格은 歷史的인 意味을 지닌 價格이지만 이 調達價格 혹은 再生產價格은 財의 그 時点에서 現實의 市場價格이다. 財貨의 眞正한 價格은 어느 程度의 크기이며, 어떤 標準에 의하여 規定되는가는 그 自體問題이지만 적어도 財産計算의 正確性을 위해서든 또는 財産計算의 客觀的妥當性을 獲得하기 위해서 이든 財의 市場價格은 그때 그때 市場의 모든 價格變動을 表現하고 있기 때문에 市場經濟內에 活動하고 있는 企業의 財産計算으로서는 信賴할 수 있는 評價基準으로 생각할 수 있다.

企業의 評價基準으로서 調達時價가 採擇된 경우 財産計算은 어떠한 意味와 關聯을 가질까?

技術한 바와 같이 調達時價는 財의 再生產價値를 表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評價된 各各의 財産項目의 價値會計는 全 企業財産의 調達時價 혹은 再生產價額을 表示한다. 換言하면 이 評價基準은 恒時 現在의 價値를 取하기 때문에 市場에서 活動하는 企業의 再生產價値를 計算 確定하는 것이 可能하다. 따라서 財産計算의 一覽表인 貸借對照表는 그때의 當該企業을 새로히 設立하기 위해 支出하지 않을 수 없는 資本額을 明示하여 財産의 再生產價値를 確定하는 任務를 갖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經營體의 個別財産部分의 調達時價 혹은 再生產價値를 合計한 것이 과연 全體로서의 企業 評價額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問題視된다.<sup>4)</sup>

貸借對照表의 目的은 具體的으로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企業의 現在 再生產額을 決定하여 收益性的인 正當한 基準으로 할 價値를 發見하려한다면 戰術한 再調達時價를 評價基準으로 擇함으로써 財産計算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따라서 調達時價에 의한 評價는 正確한 財産計算을 可能하게 하여 貸借對照表에 그때 그때의 再生產價値를 確定함이 可能하게 된다.

다음은 去來日의 調達時價가 成果計算에 어떤 意味와 關聯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는 財의 購入時点과 販賣視点 時間的間隔이 있더라

4) 山下勝治, 「會計理論 新構想」, (東京, 巖松堂書店, 1985), p. 65.

도 原價評價의 경우처럼 假裝損益分은 完全히 成果計算에서 除外된다. 따라서 原價價值以上の 價値騰貴分은 財産 그 自體의 變化에 歸着되어 財産計算部分으로 處理된다. 이와 같이 調達時價에 의한 費用의 評價는 恒시 收益과 同一한 價格水準으로 計上되기 때문에 成果計算은 理論上 正確하다. 이것은 去來成果를 計算할 때 收益증에서 企業에 留保되어야 할 部分은 當初의 投資額 즉 投下資本의 名目額이 아니고 資本의 實體 그대로 혹은 實體를 代表하는 貨幣量을 말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資本의 維持에 關하여 實體資本維持를 擇하는 者의 主張은 바로 이런 생각에 立脚하고 있다. 이와 같이 調達時價主義에 의하는 경우는 財 그 自體의 價値計算과 그 去來成果分の 計算은 確然히 區分되어 去來成果의 內容은 理論的으로 妥當性이 確報된다.

以上과 같이 原價主義와 時價主義를 比較하여 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物價變動이 繼續的이고 激甚할 때는 종래의 原價主義에서 時價主義로 轉換이 不可避하다.

### 3. 取得原價償却에 대한 批判

종래의 靜態的 減價償却의 目的은 技術의 革新, 經濟發展 및 物價水準의 繼續的인 上昇 등으로 인하여 動態的 減價償却目的觀으로 轉換되었다. 따라서 減價償却을 現實的인 原價配分の 過程으로 보는 見解가 크게 우세하게 되었고, 純會計的인 範圍를 넘어서 減價償却政策이나 管理的 減價償却으로 方向을 돌리고 있다. 다음은 주로 財務管理的인 觀點에서 傳統的 減價償却을 批判하여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觀點에서 傳統的인 取得原價回收說을 吟味하고자 한다.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은 요컨대 減價償却費를 통하여 投下資本의 回收를 위한 準備를 함에 의해서 資本을 원래의 狀態대로 維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資本回收를 媒介로 하는 減價償却 그 自體의 妥當性에 關하여는 會計實踐에 있어서 痛用上의 問題로서는 여러가지 困難한 점이 있다. 즉 減價償却에 對한 觀點의 相異에서 어떠한 減價償却을 適用해야 할 것인가가 問題되어 減價償却의 妥當性에는 의문이 提起된다. 어느 觀點에서는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減價償却도 다른 面에서 보면 分明히 不當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기에 財務管

理機能으로서의 減價償却의 妥當性を 둘러싸는 重大한 問題가 存在한다. 減價償却의 妥當性에 관하여는 세가지 觀點을 들 수 있다. 즉 取得原價回收說, 收益力維持說, 實質資本維持說 등이다.

### 1) 取得原價回收說

取得原價回收說은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에서 본 妥當性の 根據를 歷史的原價(Historical Cost)에 두어 減價償却性 資産의 『歷史的 原價는 當該資産의 耐用年數期間의 收益에서 差減해야할 移延費用(Deferred Charge)으로 하며, 歷史的原價는 減價償却에 의하여 回收되는 金額을 測定한다.』<sup>5)</sup>는 立場이다. 따라서 減價償却性 資産이 取得된 때 計算上 資本화된 金額을 完全히 回收하려는 경우에 減價償却의 妥當性이 認定된다고 생각한다. 歷史的 原價로서의 取得價額을 內容年數의 期間에 計劃的 또는 規則的으로 減價償却을 통하여 平均的으로 投下 資本을 回收하는 것을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取得原價回收說은 耐用年數終了時点에서 歷史的 原價로서의 減價償却性 資産에서 殘存價格을 差減한 『減價해야할 資産額』資産額』과 同額의 『減價償却充當金』이 計上되어 投下資本의 回收에 의한 『資本의 完全維持』가 達成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特徵이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會計手續』이며 稅法的 立場이 薦舉하는 耐用年數主義的 減價償却觀에 基礎를 두는 財務管理的 機能의 立場이라 말할 수 있다.

### 2) 收益力維持說

技術의 急速한 進歩와 激甚한 競爭生産時代에 直面한 오늘날은 새로운 減價償却觀에 立脚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將來의 收益力(Future Earning Power)을 維持하는 데 必要한 全體의 支出에 適當한 部分에 대하여는 當期原價(Current Costs)에서 留保가 行해질 때 까지는 利益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見地의 減價償却은 會計慣習이나 稅法에 卽應하여 測定되는 減價償却

5) N. A. A. Research Report, No. 33, "Corrent Practice in Accounting for Depreciation", April, 1988. p. 10.

費보다는 一般적으로 超過하게 된다. 歷史的原價라는 過去の『記錄된 事實을 떠난 現在的 立場에서 現實의 財務管理에 必要的 資金을 確報하기 위한 減價償却을 高麗하여 稅法이나 會計慣習의인 立場과는 別個로 獨自의 財務的 觀點에서 減價償却의 妥當性を 主張한다. 技術의 進歩나 競爭生産과 같은 與件을 會計上 高麗하여 償却을 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技術의 進歩에 卽應한 設備의 保存과 競爭的 生産狀況의 維持라는 目的을 위해 減價償却은 必要的 資金을 準備한다.<sup>6)</sup>는 點에서 減價償却의 特質을 求하려는 것이다.

이 觀點은 所謂 最高經營者의인 思考에 立脚한 것이어서 減價償却에 의하여 『무엇을 遂行할 것인가』를 究明하는 것에서 減價償却의 妥當性を 보는 것이다. N. A. A. 보고서에도 指摘된 것처럼 減價償却性 資産의 廢棄原因은 物理的인 減損(Lvorn Out)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原因을 過去の 經驗的 事實에 卽應하여 ① 低廉한 營業費 ② 優秀한 品質 ③ 큰 生産能力과 其他의 여러가지 有利性을 新資産의 出現에 의하여 陳腐化(Obsolescence)되어 代替되는 것에 基因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舊資産의 新資産에의 代替는 新資産에 의한 利益增加의 保證, 또는 競爭的 原因에 對應하기 위한 要件을 具備한다고 判斷되는 경우에 비로서 實行되는 것이다. 이러한 經營決定에 대하여는 經營者의 判斷을 할 때 減價償却費의 財務管理의 機能을 認識하여 將來의 收益力維持라는 見地에서 減價償却의 妥當性を 高麗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 收益力維持說의 論據이다. 物價水準의 騰貴를 度外視한 경우에도 製造方法의 技術的 進歩와 製品의 技術的 改善 등은 當然히 精密 또는 高價한 設備를 必要로 하며 陳腐化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의 財務管理의 配慮야말로 장래의 收益力維持를 可能하게 함과 同時に 投下資本의 完全維持目的을 達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3) 實質資本維持說(購買力資本維持說)이 觀點의 主唱者는 租稅目的을 위해 認識測定되는 減價償却은 不適當한 方法이라고 이를 不定한다. 租稅目的의 見地에 立脚한다면 代替해야하는 設備가 있는 경우에도 代替를 위해 設定된 準備金만으

6) Ibid, p. 10.

로는 도저히 生産能力을 가지는 新設備을 購入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만일에 租稅目的에 立脚한 償却을 한다면 必然的으로 代替金의 不足을 招來하여 否定資産部分을 다른 資金源泉에 轉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財務管理的인 面에서 支障을 招來한다. 따라서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은 無意味하게 되어 實質的으로도 名目的으로도 資本의 完全維持는 不可能하게 된다. 換言하면 이것은 資本에 대하여 『隱蔽된 課稅』(Hidden Taxation)를 意味한다. 이와 同時에 生産性維持를 위해 要求되는 生産設備의 代替에 경우 流動資産에서 減價償却性資産에의 資本資金(Capital Funds)의 循環的인 흐름을 妨害하는 것이 된다. 만일 擴張을 하지 않고 現狀에서의 標準生産能力基準下에서 經營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資金의 源泉이 再投資된 所得(Reinvested Income)이라면 納稅를 畢한 所得에 의한 資金을 意味하며 이것은 剩餘金處分에 의한 『代替資金積立金』으로 되며 減價償却에 의한 財務管理機能의 限度內의 資金이다. 이와같이 歷史的原價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費를 測定하여 繼續的으로 投下資本의 回收를 行하는 경우 必然的으로 租稅에 의한 資本의 蠶食을 超來하여 外部로 表示되지 않는 經營缺陷이 發生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 實質資本維持說의 立場에서 본 取得原價回收說의 批判이다.

이상과 같이 『當期減價償却費』(Current Depreciation Charge)는 現在 減價償却을 行하고 있는 減價償却性資金에 대하여 取得時의 貨幣價値와 同等한 購買力을 갖고 있는 資産을 準備한다<sup>7)</sup>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意味로서 減價償却의 財務管理機能이며 投下資本의 完全維持目的에 卽應한 것이라고 結論을 내린다.

이 立場을 代表하는 會社로서는 U. S. Steel Co. 를 들 수 있다. 1952年의 年次報告書에 의하면 『1941年에서 1952年의 12年間에 2.01億佛의 正常償却 以上の 計上額은 所得稅目的에서 差感되지 않았다. 이 方法의 採用에 의하여 이러한 非控除額에는 稅金을 支拂한다는 條件이 붙었다. 實質的인 減價償却費(Wear and Exhausion Costs)는 過少表示되고 純利益은 過大表示되어 租稅를 통한 資本蠶食을 發生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現行稅法下에서는 現實的 減價償却充當金(Realistic Depreciation Allowance)에 對하는 必要性은 아주 크다.』<sup>8)</sup>고 말하고 또 1956年의

7) Ibid, p. 11.

8) U. S. Steel Co. Annual Report for , 1987, p. 25.

營業報告書에서는 購買力回收의 實質的 基準에 대하여 資本的 支出年度와 減價償却을 行할 年度와의 사이에 介在하는 貨幣價値의 變動에 대한 修正을 行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現在의 購買力을 나타내는 貨幣價値로 換算하여 必要한 減價償却原價를 測定하는 方法이 利用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方法에 의하여 購買力維持目的을 위하여는 충분한 正確性을 갖고 있다.』<sup>9)</sup>고 말하고 있다. 이 U. S. Steel Co. 의 見解를 引用하는 N. A. A. 는 研究報告書 第33號의 調查에서 먼저 引用한 U. S. Steel Co. 外에 크라이슬러레트, 로이트-하베스터 등 著名한 會社 55社 中에서 그의 3分の 1에 가까운 會社가 第三說의 實質資本維持說에 立却한 減價償却觀에 多大한 關心을 갖고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積極的으로 支持하고 있는 代表的 會社는 U. S. Steel Co. 을 들고 있고 前述한 年次報告書의 引用文도 이것을 明示하고 있고 N. A. A도 이 實質資本維持說을 支持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以上에서 財務管理的 側面에서의 減價償却의 妥當性을 둘러싸는 세가지 立場에서 그의 論據를 中心으로 究明하였지만 美國은 現實의 會計實務에 있어서는 이 세가지 學說 中에서 歷史的原價回收說을 固執하는 傾向이 매우 強하다는 것을 N. A. A. 의 調查도 認定하고 있다. 이 原因에 關하여 主要한 것을 列擧한다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① 稅法을 根據로 한 製約
- ② 建物 構造物과 같은 場所的 減價償却性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觀의 生産的 減價償却性資産에의 準用
- ③ 安定經濟를 前提로 하는 思考方式을 踏襲하여 技術의 進歩나 物價變動을 與件의 事項으로 看做하며 會計實務面에서 排除하는 會計慣習의 根底에 存在한다는 것.
- ④ 減價償却에 關하여는 會計計算上 매우 큰 影響을 미치지 않았던 時代의 思考方式에 젖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歷史的原價回收說을 적용하려는 경우 稅法的 制限에 順應하는 立場은 論外로 하더라도 建物構造物 등의 場所的 固定資産이 있으며 長期的 使用을 目的

9) N. A. A. Research Report, Ibid, p. 12.

10) Ibid, pp. 12~14.

으로 한 代替性이 적은 資産의 경우에만 限定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機械裝置와 같은 生産의 固定資産에 最近과 같은 急速한 進歩를 隨伴하여 陳腐化速度가 加速的으로 됨에 따라 早期廢棄에 의한 代替의 必要性이 생겨 技術的 要素나 競爭生産的 要素를 勘案한 收益力維持說에 立却한 減價償却의 財務的 機能을 認識하여 投下資本의 安全維持를 意圖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貨幣 價値의 變動에 대하여는 計算的 配慮가 必要할 경우는 巨視的인 社會회계의 觀點과는 별도로 經營者의 會計的 判斷을 위해 財務管理的인 減價償却資料를 準備하여 購買力維持의 觀點에서 資本의 完全維持를 高麗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代的 實踐的 要求가 생기는 경우도 高麗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具買力維持說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의 實踐的 利用에 관해서는 純會計的으로 計算合理性의 點에 많은 問題點이 있다.

以上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의 觀點에서 본 妥當性에 관한 세가지 觀點을 概說하였지만 N. A. A. 의 調査에 있어서도 이 세가지 說中에서 第2), 3)說을 積極的으로 主張하는 會社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그렇지만 美國의 現實이 會計實務에 있어서 이미 第1)說인 取得原價回收說을 固執하는 傾向이 매우 強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sup>11)</sup> 우리나라에서도 稅法的 規制에 의하여 一律的으로 이 取得原價回收說에 立脚하고 있다. 取得原價回收說은 減價償却의 財務的 機能에 妥當性이 있는 根據를 歷史的 原價에 두어 減價償却性 資産의 取得時 歷史的 原價는 當該 固定資産의 耐用年數期間에 發生한 경우 計算上 資本화된 歷史的 原價가 耐用年數終了時까지 收益을 通하여 回收하려는 경우에 歸納的으로 減價償却의 財務的 妥當性이 認定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歷史的 原價로서의 減價償却性 資産의 取得原價를 耐用年數의 全期間에 計劃的 規則的으로 減價償却을 통하여 期間配分을 하고 投下資本의 回收를 行하는 것을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耐用年數의 終了時에 歷史的 原價로서의 減價償却性 資産의 取得價格 相當額을 差引한 『減價償却을 해야 할 取得價格部分』에 對應하는 『減價償却充當金』에 貸邊側에 計上됨에 의하여 投下資本回收에 의한 『資本의 完全維持』가 達成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端的으로 말하면 耐用年數主義的 減

11) Ibid, pp. 12~14.

價償却에서 본 減價償却說이고 稅法的 立場이 代表하는 方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會計實務가 어째서 取得原價說을 固執하는 것일까? 歷史的原價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費에 대한 有力한 反對論으로서의 收益力維持說이 提唱됨에도 不拘하고 왜 歷史的取得原價에 執着할까?

이에 관한 N. A. A. 報告書의 調査에 의하면 歷史的原價回收說을 固執하는 理由는 原始달라 支出額(Original Dollar Expenditure)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回收額이 不適當하다는 事實에 관하여 널리 認識되지 못한데 原因이 있다고 指摘되고 있다.<sup>12)</sup> 具體的으로 이 點을 究明하면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즉 N. A. A. 에 의하면

- ① 減價償却의 不適應性에 관한 自覺의 缺如
- ② 競爭的 販賣條件에서 減價償却原價가 獲得하지 않으면 안되는 必要販賣高에 대한 認識의 缺如
- ③ 歷史的인 달러支出額에 의한 減價償却費를 制限하는 租稅에 대한 認識의 缺如

以上 各 要因에 對해 고찰해 보면 먼저 減價償却의 不適應性 問題인데 본래 減價償却의 問題는 技術의 進步나 貨幣價值變動과 같은 것은 與件的 事項으로서 排除하는 것이다. 따라서 根本的으로는 安定된 靜態經濟狀態에서 減價償却의 問題를 高麗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安定된 經濟狀態의 減價償却問題는 減價償却原價의 各 會計年度에의 合理的 配分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合理的 期間收益의 算定을 위해 固定的 期間費用으로서의 減價償却費 測定이라는 것이다. 財務的 側面에서는 歷史的 取得原價의 期間配分에 의하여 投下資本의 合理的 回收가 行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減價償却性資產의 取得時點에서 歷史的原價가 廢棄時點의 代替原價와 同一價格水準에 있다는 것을 前提로 實際費用과 貨幣費用이 完全히 일치하고 있다는 純粹減價償却理論으로서의 立場이다.

歷史的取得原價回收說을 固執하는 根據는 이러한 純粹減價償却理論을 어디까

12) Ibid, pp. 12~14.



지나 支持하려는 立場에서 求할 수 있다. 技術의 顯著한 進步나 競爭의 激甚化 혹은 物價騰貴와 같은 經濟事情은 與件的 事項으로서 排除하고 『減價償却을 配分過程』<sup>13)</sup>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前後 急速히 減價償却의 重要性이 增大된 主要한 原因을 N. A. A. 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sup>14)</sup>

- ㄱ) 貸率의 上昇과 競爭의 激化는 大規模의 機械化를 促進하여 그 經過 減價償却性資産에 대한 投下資本의 增大와 減價償却費의 增加.
- ㄴ) 資産의 急速한 陳腐化
- ㄷ) 減價償却性資産의 代替·近代化 및 擴張을 위해 必要한 現金保有高를 增加시키는 物價騰貴

以上과 같은 減價償却의 事情下에서는 이미 安定經濟를 前堤로 한 歷史的인 取得原價回收說을 固執하는 것은 確實히 『時間的인 停滯』이고 經營者의 時代感覺에 대한 鈍感을 나타낸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經濟의 發展傾向을 認識한다면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의 一面으로서는 設備의 大規模化에 따른 巨大한 投下資本의 健全한 回收政策을 고려함과 더불어 陳腐化速度의 迅速化에 따른 適合한 償却政策에 의한 財務管理를 合理化하여 다시 代替·近代化 및 擴張을 위한 資金이 物價騰貴에 卽應하는 財務態勢를 取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美國은 物價가 比較的 원만하게 上昇하는데도 減價償却의 財務管理的 機能에 의하여는 相當한 關心을 보이고 있음을 N. A. A. 報告書가 指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經濟事情에 비추어 볼 때 歷史的原價에 基礎를 두는 取得原價回收說에서 說皮하여 收益力維持說이나 實質資本維持說의 檢討를 實務의 面에서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取得原價回收說의 財務管理的 機能에서의 現實遊離를 認定하고 歷史的인 取得原價回收說에 立脚한 減價償却의 不適應性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不適應性에 대한 知識의 缺如가 取得原價回收說을 固執하는 하나의 主要原因으로 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두번째 競爭的 販賣라는 條件下에서 減價償却原價가 稼得하지 않으면 안되는 必要販賣高에 對하는 認識缺如의 問題인데 減價償却의 對象으로 되는

13) Carman G Blongh Depreciation-To Measure Income or Provide Fund for Replacement  
N. A. A. Bulletin, August, 1988, p. 47.

14) N. A. A. Research Reort: op. cit, pp. 1~2.

減價性資產은 그 本質的 特徵으로서 長期使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取得時點과 代替時點과의 사이에 設備의 改善이나 新機械의 發明과 같은 技術의 進歩가 생기고 物價變動이 必然的으로 發生한다. 물론 取得原價回收說에서는 歷史的인 取得原價는 耐用年數期間에 回收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技術的인 問題나 物價騰貴와 같은 與件的 事項을 無視한다면 代替時點에 이르기까지는 生産力 維持를 위한 新設備의 取得에 關하여 減價償却充當金에 의한 代替資金의 不足을 補充할 수 없기 때문에 代替時點에서는 비로서 追加資金이 必要하게 된다. 이러한 減價償却의 財務的機能은 現實에 卽應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換言하면 歷史的原價로서 耐用年數期間에 原價配分하여 減價償却費를 期間原價로서 會計處理한다는 생각에 立脚하는 것이 取得原價回收說이라할 수 있다. 그런데 減價償却性資產은 營業用資產으로서 企業資產을 構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營業上의 收益을 通하여 減價償却性原價가 減價償却費에 轉化하는 것에서 財務的인 回收가 行해진다. 따라서 取得原價回收說에서는 그 收益이 現實的인 現在 價値에서 認識되는데 대하여 減價償却費는 歷史的價値로서 期間配分되기 때문에 費用과 價値사이에는 큰 間隔이 發生한다. 設備의 實際費用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歷史的費用을 回收하는데 問題가 있다. 期間收益과 期間減價償却費의 關係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物價騰貴의 傾向이 있다면 必然的으로 過少減價償却費로 되고 나아가서는 過大利益으로 되어 過大租稅負擔을 招來한다. 實際費用을 無視하여 歷史的 費用을 固執하는 것은 減價償却費가 賣上(收益)을 通하여 커버리고 財務管理機能으로서의 實質的인 投下資本의 回收를 實現하는 것을 認識하지 않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現實的인 價値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費에 의하여 投下資本을 回收하기 위하여는 適當한 歷史的인 減價償却에 따른 利益을 計算함과 同時에 實際費에 의한 不正減價償却部分은 社因留保에 의하여서만 設備의 代替資金이 確報된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세번째의 觀點은 歷史的 달려 支出額에 의한 減價償却費를 法的으로 制限하는 租稅에 대한 知識의 缺如이다.

稅法의 立場은 會計的 立場과 本質的으로 다르며 더욱이 法的強制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企業會計的 立場은 實踐面에서 많은 劑約을 받고 있는 것이 周知의 事實이다. 反面 減價償却實務에서 減價償却費가 會計計算上 重要한 地位를 차지

했던 時代부터 이미 稅法에 依하여 費用으로서 容認되고 그 稅法의 取扱에 따라서 減價償却費를 會計實務에 受入하였다. 즉 減價償却費는 稅法을 媒介로 하여 會計實踐上의 基礎가 확립된 것이지만 이것이 現在에 逆으로 法的인 強制力에 의하여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稅法自體도 經濟의 發展에 卽應하여 改正되었지만 根本的으로는 減價償却費의 計算에 대하여 歷史的原價를 固執하고 取得原價回收說에 立脚하고 있다는 點은 現在 조금도 變함이 없다. 이와 같은 法的 強制力下에서의 取得原價回收說이 實施되는 것이 會計實務上 아무런 反省없이 稅法에 다른 立場이 擇해지는 重要한 原因으로 되었던 것은 不定할 수 없다. 그러나 現在와 같은 經濟的現實下에서는 아무런 反省없이 遵法精神에 徹底하는 것만으로는 代替資金의 不足을 낳고 企業存立의 危機에 逢着하게 되는 事態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稅法의 範圍에서 減價償却의 財務管理機能에 滿足하는 것을 올바른 財務管理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稅法을 無視한 理想的인 財務管理機能을 減價償却에서 求한다는 것도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런 反省을 하지 않고 現實에 卽應하지 않는 稅法에 盲從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稅法의 制約을 甘受하면서 企業의 資本維持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配慮가 必要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稅法에 基礎를 두는 減價償却의 財務管理機能의 不適應性에 대해서는 認識을 깊이 함과 더불어 減價償却性資產의 特質에 準하여 各自의 財務計劃에 基礎를 두고 減價償却을 통하여 代替資金을 確報하는 財務管理方策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國에서 이 問題에 關하여 N. A. A. 報告書는 具體的으로 『現在의 物價水準에 卽應한 減價償却費를 表示하여 여러가지 經營管理目的을 위하여 그 資料를 利用한다』<sup>15)</sup>는 方法을 採擇하고 있는 會社가 55社中 約 3分の 1에 미친다고 말하고 이 會社中 2個社에 關하여 例示하고 있다. 즉 損益計算上 配當決定의 基準으로서는 資產의 現在價値에서 計算된 減價償却費를 計上하고 測定된 利益에 基礎를 두고 實際資本을 蠶食하는 것을 防止하는 方策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點에서 가장 積極的인 態度를 取하는 會社로서 U. S. Steed Co. 에서는 帳簿上 歷史的原價에 의한 減價償却에서 損益計算書를 作成함과 同

15) Ibid, p. 14.

時에 1937年以後의 各年度의 購買力에 基礎를 두어 回收에 必要한 減價償却額으로서 作成한 損益計算書의 두가지 計算書를 年次報告書에 表示하고 있는 것을 紹介하고 있다.<sup>16)</sup>

以上과 같이 N. A. A. 報告書가 歷史的 原價에 의한 取得原價回收說의 稅法的 制約에서 오는 點과 取得原價回收說에의 反省을 促求함과 동시에 實際資本을 維持하기 위한 現下의 減價償却에 의한 財務管理의 方向을 表示한 점이 多分히 나타나고 있다.

#### 4. 時價償却의 主張

1) 物價變動과 企業利益 및 資本維持 貨幣價値의 安定한 不變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時勢는 끊임없이 變動하여 이에 따라 貨幣價値도 끊임없이 變動한다. 取得當時는 原價와 時價는 一時的 瞬間的으로 일치할 수 있지만 時間의 經過에 따라 原價의 價値는 서서히 혹은 顯著하게 相達하게 된다. 그렇지만 종래까지의 現代社會는 貨幣價値의 變動은 無視되어 왔다. 이 경우 만일 貨幣價値의 變動이 微弱하다면 前과 같이 貨幣價値不變의 假定에 따라서 會計處理를 해도 틀림이 없다. 이것은 價値 그 自體가 單純한 推定이며 主觀的인 意見에 不過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不確實한 要素를 會計에 導入한다면 會計의 客觀性은 破壞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會計上 輕微한 物價變動은 考慮外로 두고 企業利益의 計算도 通常의 경우에는 輕微한 變動을 無視하여 貨幣價値不變의 假定下에 取得原價主義를 求한다. 그렇지만 貨幣價値變動이 急激하고도 繼統的인 경우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도 通常의 方法에 의하여 會計處理를 하면 여러가지의 不利益을 가져온다. 物價水準의 變動下에서는 企業의 利益이 過大 또는 過少하게 評價되어 企業의 收益率도 顯著하게 歪曲된다. 이런 事情에서는 原價 그 自體는 결코 價値의 指標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資產會計에서 取得原價主義는 극히 의심스럽고 客觀性도 잃게 되기 때문에 物價變動期에는 貨幣單任의 安定이나 貨幣價値不變이라는 前提가 信賴할 수가 없게 되어 이 假定에 立脚한 會計 즉 取得原價主義는 再檢討를 要한다.

16) Ibid, p. 14.

貨幣價值不變의 前提가 實際的이 아니라고 再檢討되고 物價變動에 適應한 會計處理가 要求된 直接의 原因은 第一, 二次 世界大戰後 世界各國에서 나타난 (특히 독일) 인플레이션이었다.

인플레이션은 企業會計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다음은 企業會計의 中心問題인 利益計算 및 資本維持와 관련을 지어 論하기로 한다.

인플레이션은 여러가지의 影響을 企業에 미친다. 먼저 會計의 中心問題인 企業利益의 計算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費用 이것은 過去에 發生한 歷史的原價가 配分되어 收益에 對應하는 期間費用으로서 計上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는 過去의 低水準으로 反映되어 過少하게 表示된다. 본래 原價는 經營의 努力을 表示하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의 結果 正當한 努力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建物, 設備, 機械 등의 固定資産에 관하여는 費用으로서의 減價償却은 過去의 低水準에 있었을 때의 歷史的原價에 基礎를 두고 計算한 것이기 때문에 收益을 算出하기 위한 犧牲 價値로서는 매우 적게 表示되어 費用으로서의 正當性を 잃게 된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結果로서는 歷史的原價가 收益에 對應되는 費用으로서는 전혀 役割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事情은 在庫資産에 있어서도 어느 程度 적용된다. 商品이나 製品을 所有하고 있을 때 大幅敵인 物價變動이 있다면 이것이 販賣될 경우 賣上高에 對應하는 費用으로서의 賣出原價는 過去의 低水準인 歷史的原價에 依하여 表示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表示되어야 할 것보다 적게 表示된다. 在庫資産은 固定資産에 比하면 回轉이 比較的 빠르기 때문에 急激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그것이 問題되지 않기는 하지만 역시 正當한 費用으로서 過小하게 評價되는 것만은 確實하다.

둘째, 原價가 過去의 低水準인 限 原價計算에 있어서도 도저히 效果的인 生産費를 計算할 수 없다.

製品의 原價를 算定하는 경우 低水準에 購入한 原料의 原價를 가지고서는 올바른 消費價値를 測定할 수 없다. 또한 인플레이의 進行情況에 購入한 原材料를 併用한다면 原價의 構成이 顯著하게 變하기 때문에 이때 計算된 製品原價는 無意味한 教學의 合計에 不過하게 된다.

이와 같이 原價計算機能의 破壞는 直接的으로는 生産費의 效果的인 決定이 不

可能하게 되며 原價計算制度가 營業管理의 用具로서 機能을 하고 있는 경우는 生産能率의 良否의 判斷이 不可能하다. 그렇기 때문에 管理機能 全體가 盲目的인 狀態에 빠져 甚한 混亂狀態를 보이게 된다. 또한 原價計算制度가 政策決定에 奇與하는 경우, 예를 들면 賣價決定이 不可能하게 되는 것처럼 政策目標을 樹立할 수 없게 된다.

셋째, 原價가 過少하게 表示되는데 反해 收益은 인플레이션을 反映하여 高水準으로 測定된다. 물론 收益도 顯著한 인플레이션에서는 正當하고 眞實하게 反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會計期間이 一年인 경우에는 最惡의 경우 一年以前의 物價水準으로 計算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原價가 數年前 혹은 數十年前의 物價水準을 反映하고 있는데 대하여 收益은 現在의 物價水準에 어느 程度 接近되어 測定되기 때문에 모순이 發生한다.

네째, 收益과 費用의 對應에 의하여 計算된 企業利益은 인플레이션의 結果 假裝利益(Paper Profit)을 포함하여 過大하게 表示된다. 즉 收益이 比較的 現在의 物價水準을 反映하여 高水準으로 計上되는데 대하여 이에 對應하는 費用은 過去의 歷史의 原價이기 때문에 매우 低水準으로 測定된다. 顯著하게 다른 物價水準下에 費用과 收益에 對應되는 結果 企業利益은 過大하게 評價計上된다. 假裝利益은 單純한 物價變動에 依한 利益이며 當學活動의 結果 얻어지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歪曲된 利益을 表示하는 것이 된다. 假裝利益은 인플레이션이 進行하면 할수록 그 比率는 점점 크게 되어 企業의 올바른 尺度를 測定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損益計算의 機能, 즉 會計機能을 根本적으로 崩壞시킨다.

以上과 같이 인플레이션은 損益計算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 외에도 資本維持에도 다음과 같은 惡影響을 미친다.

첫째, 인플레이션下에서는 企業의 資本維持가 不可能하게 된다. 즉 企業利益이 正當하게 表示되지 않고 假裝利益을 包含하여 過大하게 表示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課稅 또는 配當 등으로 不當한 資本의 社外流出을 甘受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經營을 前과 같은 規模에서 繼續하는데 必要한 資金이 不足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에서는 假裝利益이 包含되기 때문에 資金의 收益率이 異常하게 높은 데

에도 他方에서는 逆으로 運轉資金이 缺如되는 것은 이미 그것 만큼의 資本을 屬量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進行하면 할수록 經營의 資本維持는 극단적으로 困難하게 된다. 그 결과 規模縮小나 負債增加를 不可避하게 한다.

둘째, 企業의 貸借對照表는 企業의 經營狀態나 財務狀態를 전혀 表示할 수 없게 된다. 즉 固定資產은 아주 低水準의 原價를 表示하고 있는데 反面에 流動資產은 比較的 最近의 高水準物價를 反映하고 있기 때문에 兩者는 極端의 不均衡狀態를 取한다. 또한 同一의 財貨라도 購入時期가 다름에 따라서 顯著한 差異가 있는 原價를 表示함에 따라서 正當한 判斷의 基礎를 잃게 된다.

負債에 관하여는 그것이 長期的인 負債일수록 소위 債權者利潤은 他方에서 債權者損失에 依하여 물론 相殺되지만 그렇더라도 財産構成이 異常한 狀態를 取하게 된다. 自己資本에 관하여도 新設企業과 오래된 企業사이에는 經營의 規模가 같더라도 資本金의 크기가 아주 다르다. 따라서 自己資本에 대한 法人稅負擔도 아주 不公平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의 영향은 企業의 財産構成의 면에서 不均衡으로 나타난다.

셋째, 經營比較나 經營分析을 行하는 경우 各種의 比率이나 數値에 따른 適當한 判斷이 어렵다. 즉 合計를 管理的 目的으로 利用할 수가 없다. 또한 經營者는 假裝利益에 眩惑되어 올바른 經營判斷이나 合理化를 避할 수 없다. 오히려 資金難을 解決하기 위한 商品덤핑을 行하는 등 점점 不健全한 經營을 하게 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이와같이 經營者의 立場에서도 自己企業의 收益力을 分析하여 이것을 基礎로 여러가지의 經營政策, 예를 들면 貸金政策, 信用政策, 配當政策, 事業擴張政策 등을 決定하는데에도 크게 妨害된다.

네째, 國民經濟的 見地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看過할 수가 없다. 일례로써 政府가 貨幣政策, 價格政策, 利潤制限 등을 行하는 경우 이 政策決定에 會計가 아무런 資料를 提供할 수 없다. 또한 企業이 外部의 利害關係者에 대해서 好訴할 때 利潤, 價格, 貸金, 財務 등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決定的인 資料를 會計에서 入手할 수가 없다. 따라서 國民統制的인 見地에서도 企業이 社會에 대하여 P.R을 하여 올바른 世論을 誤記할 때 會計를 利用할 수 없다. 인플레이가 심하면 심할 수록 그 모순이 점점 강하게 表面化되어가서 會計의 記錄과

經營의 實態와는 아주 分離되어 企業의 會計記錄은 經營實態를 전혀 反映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인프레의 영향을 除去하기 위한 會計處處方法이 實실히 要求된다.

以上과 같은 現實의 狀態에 適應할 수 있는 現實的인 會計處理를 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取得原價主義에 立脚한 會計方法으로는 전혀 不可能하다. 여기에 새로운 方法으로서 時價主義原則에 立脚한 會計處理方法이 擡頭하게 된다. 물론 修正原價主義나 再評價의 方法에 의하여 前述한 變化에 對應할 수도 있다고 主張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批判은 前節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時假主義原則에 立脚한 時價償却을 함으로써 利益計上은 물론 企業의 實質資本을 維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時價主義會計原則에 立脚한 時價償却에 대한 批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佐藤孝一教授의 批判을 簡單히 高찰하고 이에 대한 解明을 함으로써 끝을 맺고저 한다.<sup>17)</sup>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固定資產은 流動資產과 같이 轉流를 目的으로 取得한 것이 아니고 企業內部에서 使用消耗되는 것이어서 市場과는 關係가 없기 때문에 取得原價에 의한 償却을 행하면 時價償却은 妥當하지 않다. 이 경우 材料費나 勞務費는 時價에 의하여 計上됨에 不拘하고(특히 材料費는 最近에 後入選出法이 점차 重要視됨에도 不拘하고) 同一한 費用項目인 減價償却은 取得과 代替와의 期間이 길기 때문에 時價變動을 考慮치 않는 것은 理論上 모순이며 評價의 一慣性을 缺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現實에서는 반드시 劃一主義을 擇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劃一主義가 困難하다는 事實을 말했을 뿐 어떠한 理由에서 困難한지 具體的인 解明이 없다. 더구나 그는 理論的으로는 正當하다고 말함에 不拘하고 그렇게 結論을 내린 것은 理解하기 힘들다.

② 『將來의 代替價格이나 代替費는 取得當時에 預測할 수 없으며 비록 한다고 하더라도 不確實하며 또한 物價의 變動은 반드시 一放的으로 騰貴 혹은 下落을 하는 것이 아니고 不規則이고 波動的이기 때문에 時價變動에 應한 時價償却은 計算技術上 困難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計算上 不確實性和 主觀이 介入할 餘

17) 佐藤孝一, 「新會計學」, (東京, 中央經濟社, 1984), pp. 270. ff.



地가 있음을 認定하나 會計는 원래 一定한 主觀이 介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現實價値의 遊離된 原價記錄에서 오는 幣短이 더 크다할 수 있다. 그리고 物價變動이 起伏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問題視할 필요가 없으며 現實에서 보면 物價는 例外없이 上昇하며 設使 起伏이 있음을 認定하더라도 會計處理上 別問題가 되지 않는다.

③ 『減價償却을 할 때 物價騰貴를 豫想하여 이것이 代替費나 改築費를 넘는 損益計算이나 原價計算에 算入하는 것은 會計上の 問題이기 보다는 經營政策, 財務管理上 問題이다.』

이 點은 論議의 餘地가 없는 意見이라 생각한다. 구태여 純理論과 經營政策과 區別할 必要는 없다. 오히려 理論 그 自體로서는 無價値하다고 생각한다.

④ 會計處理로서 間接法을 採用한 경우 減價償却充當金計定을 設定하는데 이 計定은 消極的 評價計定이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財産價額의 超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物價騰貴를 豫想하여 代替費를 算入한다면 이 充當金은 當該資産을 必然的으로 超過하게 되는데 이것은 評價計定の 性質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에 不合理한 結果로 된다.

이 主張은 純會計的 立場에 立脚한 것이며 財務管理的 觀點에서 본다면 別로 問題視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償却調整計定을 設定하여 調整할 수도 있다.

⑤ 『時價償却을 實行하는 것은 法的 制度的 障害는 별도로 하더라도 各 固定資産에 대한 時價를 調査決定하며 償却을 修正하는 것은 計算技術 및 計算勞費 때문에 거의 實行 不可能하다.』

물론 個個의 固定資産에 대하여 일일이 計算修正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會計資料의 客觀的인 現實價値表示는 正確한 損益計算 및 資本維持 등의 觀點에서 본다면 不可披한 일이다. 取得原價主義에 대한 不信이 深化되어 있는 現行 會計制度上 修正原價主義와 對比해 볼 때 不可避한 일이다. 그리고 美國과 같은 나라는 『電子計算機의 使用으로 이러한 計算上の 複雜性은 크게 論議의 對象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以上 時價償却의 實行上 困難點을 佐藤孝一教授의 主張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結論的으로 말해 時價償却은 現實에 符合되는 會計處理方法이다.

## 2) 時價償却의 主張論據

時價償却을 主張하는 論據는 다음과 같다.

- ① 原價計劃上의 目的
- ② 實質資本維持上의 目的
- ③ 經營比較의 目的
- ④ 損益計算上의 目的

原價計算上 製造를 위해 消費된 費用의 計算과 製品의 價格決定을 目的으로 하는 때에 製品完成 또는 販賣時의 評價額으로서 消費된 費用을 基礎로 計算해야 된다는 것은 當然하다. 그렇기 때문에 減價償却에 대하여도 固定資產의 取得價格을 基礎로서 減價償却費를 計算하는 것은 不合理하며 製品製造時의 固定資產의 再調達價格 즉 時價를 基礎로서 減價償却을 하지 않으면 製品의 正確한 價格을 算出할 수 없다.

다음으로 時價償却에 대한 重要한 論據는 經營의 實質資本維持이다. 原價를 基礎한 償却은 오직 名目資本의 回收維持만이 可能하다. 그러므로 만일 物價變動이 甚하여 貨幣價値가 繼續하여 下落할 경우는 實質資本의 維持는 不可能하게 되어 企業은 固定資產을 廢棄할 때는 不足額만큼 새로 資金調達의 方式을 取하여 不足資金을 補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따라서 原價에 의한 償却을 繼續하게 되면 減價償却額이 實際以下로 計上되기 때문에 架空利益이 發生하여 正常以上の 過大利益이 計上되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資本課稅, 제꼬리配當을 하게 되어 資本蠶食을 초래한다.

그 다음 經營比較의 目的에서 볼 때 原價에 의한 償却을 하게 되면 償却額의 不正確한 計上結果로 利益이 歪曲되어 表示되기 때문에 企業의 올바른 期間比較 내지 異種企業間에 相互比較가 不可能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經營資料를 提供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經營管理를 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損益計算上 原價에 의한 償却을 한다면 費用은 相對的으로 낮게 評價되고 收益을 높게 評價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架空利益을 發生시킨다. 물론 原價論者들은 未實現利益이 포함되기 때문에 올바른 方法이 못된다고 主張하겠지만 『未實現된 利益도 여하튼 利益임에는 틀림이 없다.』<sup>18)</sup>

18) 金洵植, 「會計學」, (서울, 章旺社, 1986), p. 25.

### 第Ⅲ章 結 論

以上에서 傳統的減價償却方法과 時價償却方法에 대하여 比較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1. 本研究의 目的은 傳統的인 減價償却論을 면밀히 再檢討分析하여 現在의 狀況에 適合한 새로운 償却方法 즉 時價償却의 基礎理論을 研究分析하여 時價償却論을 主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時價償却의 理論은 너무나도 尙大하고 深實한 理論이기에 관련있는 모든 理論을 제시할 수 없었다.

2. 時價償却을 論하자면 必須的으로 評價主義에 對하여 論해야만 한다. 評價主義는 오래 前부터 研究되어 왔지만 아직도 明確하고 分명한 主張과 理論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종래부터 내려오는 慣習과 因習에 젖어 그대로 原價評價主義에 立脚한 會計理論을 適用하여 왔는데 經濟的 事情이 前과는 判異하게 됨으로써 傳統的인 종래의 方法에 대한 在庫는 必然的으로 要請되게 되었다. 더구나 現在는 世界的으로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繼續的이고 激甚한 貨幣價值下落으로 貨幣價值不變의 公準에 立脚한 現代會計는 再考되어 새로운 方向으로 一步 前進해야 될 것이다.

3. 時價償却의 主張을 要約하면 投下資本의 完全回收維持가 正確하고 現實的인 利益計算과 經營比較 및 分析에 응용할 수 있는 有用性있는 會計計算이 되도록 하는 償却計算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現實的인 實行은 매우 困難한 바 있다. 다른 모든 理由는 且置하고 現行의 適法稅法 및 會計基準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과 企業에서의 健全하고 有用性 있는 會計資料를 作成하기 위해서는 分離하여 別途로 實行할 수 있다.

4. 漸進的으로 時價論의 妥當性이 完全히 保證될 때 諸法 時價償却의 方向으로 引導해야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88.
2. 金洵植 『會計學』, 章旺社, 1986.
3. 韓國經濟開發協會, “減價償却에 관한 『研究報告書』” 1986.
4. 山下勝況 (譯), “シヨツツナ”有機觀對照表學說”, 東文館, 1989.
5. 高松和男, 『物價變動會計』, 春秋社, 1986.
6. 木村和三郎, 『新版減價償却論』, 森山書店, 1985.
7. 佐膳孝一, 『新會計學』, 中央經濟社, 1984.
8. F. Schmidt: Der Wiederbeschaffungs Preis des Umsatztagesin Kalkulation und Volks-wirtschaft, Berlin, 1983.
9. W.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1985.
10. Cf. AICPA: Departure from the Cost Basis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87.
11. W. A. Paton: Measuring Profits under Inflation Conditions,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86.
12. C. Synder: Commodity Prices Versus the General Price Level,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86.
13. N. A. A. Research Report, No. 33, “Current Practice in Accounting for Depreciation”, April, 1988.
14. U. S. Steel CO: Annual Report for, 1987.
15. Carman G. Blongh: Depreciation-To Measure Income or Provide Fund for Replacement, N. A. A. Bulletin, August, 1988.